

신한BNPP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2호[채권]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종류C-i수익증권 가입자격의 수정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C-i수익증권 가입자격의 수정 :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종류C-i 수익증권 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-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종류C-i 수익증권 - <u>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,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 -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종류C-i수익증권 가입자격의 수정
-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-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C-i수익증권 가입자격의 수정 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-i 수익증권 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-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-i 수익증권 - <u>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,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 -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
1. 종류C-i수익증권 가입자격의 수정 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-i 수익증권 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-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-i 수익증권 - <u>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,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 -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
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 <u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4월 30일)</u>
3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- <u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4월 30일)</u>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종류C-i수익증권 가입자격의 수정
-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C-i수익증권 가입자격의 수정 :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-i 수익증권 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-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법인(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-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-i 수익증권 -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,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-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
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4월 30일)